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285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B

피고연천군

소송대리인 C, D

변론 종결2021. 1. 14.

판결 선고2021. 2.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8,96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2021. 2.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0. 8. 15.부터 경기 연천군 E 전 704m²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518,0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0. 8. 15.부터 경기 연천군 E 전 70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55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1972. 6. 24. F으로부터 그 소유인 분할 전 경기 연천군 G 전 3,445m²(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같은 리에 위치한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군용 사격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1972. 1.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실제 군용 사격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6·25 사변으로 인한 피난민 등의 정착지로 사용되었고, 대한민국 산하 국방부는 1994. 6. 11. 이를 점유자들의 점유현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G 전 337m², H 전 165m², I 전 130m², J 전 329m², K 전 341m², L 전 371m², M 전 815m², N 전 253m²(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들 등 인근 토지들의 통행로 사용되던 부분이다.

다. 한편, F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가 대한민국의 매수 목적인 군용 사격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자, 1996. 2. 28. 대한민국에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1996. 9. 1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F은 2000. 6. 21. O에게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H, I, J, K, L, M, N 토지를 매도하여 2000.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는 2007. 6. 13. P에게 위 각 토지를 증여하여 2007. 6.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원고가 2014. 5. 14.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각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하면서 인근 일반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실상의 점유 주체로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5. 14.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피난민 등의 집단 정착지로 조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F과 O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등 참조),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도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은 대한민국이 이미 형성된 피난민 등의 점유현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②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를 피난민 등 점유자에게 분양하거나 매도하는 등 처분한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는 대한민국이 원래 소유자인 F로부터 매수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환매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F에게 환매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 5. 14.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년 전인 2015. 2. 25.까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원고가 2020. 2. 2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5년 전인 2015. 2. 25.까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감정인 Q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2. 26.부터 2020. 8. 14.까지의 임대료는

2,988,967원(=654,000원÷365일×77일+501,000원+518,000원+563,000원+580,000원+557,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이고, 그 이후의 임대료는 연 518,064원(=132,000원÷93일×365일)

상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988,9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9. 16.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20. 8. 15.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518,0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정효채